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김은혜 · 서천호 · 이소희
김소희 · 김종양 · 정동만
안철수 · 강승규 · 김승수
배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,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배제한 후 해당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한편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성과조건부주식은 현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의 장기근속과 성과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주식보상수단이라는 점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과 경제적 기능이 유사함.

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은 현금 보상이 아니라 주식 보상으로 교

부 시점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음에도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, 임직원이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 또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는 비과세 특례와 납부특례가 적용되는 반면,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없어 주식보상제도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,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, 그 한도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아울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, 성과조건부주식의 반환 또는 소유권 상실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6(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 특례)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(이하 이 조에서 “벤처기업 임직원”이라 한다)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7제1항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기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성과조건부주식”이라 한다)을 교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(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 당시의 시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교부이익”이라 한다)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교부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간 한도 및 벤처기업별 총 누적 한도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합산하여 적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의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7(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

례)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(이하 이 조에서 “벤처기업 임직원”이라 한다)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해당 벤처기업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기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성과조건부주식”이라 한다)을 교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(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당시의 시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교부이익”이라 한다) 중 제16조의6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.

1. 제16조의6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127조,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.
2.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「소득세법」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제16조의6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부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부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분할납부세액”이라 한다)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.
3. 제2호 후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은 성

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「소득세법」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「소득세법」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계약 해지 또는 해제, 환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성과조건부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한 성과조건부주식에 상당하는 분할납부세액 중 미납부액은 납부하지 아니하고,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중 해당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이익에 관련한 세액은 환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성과조건부주식의 시가 산정방법, 납부특례의 신청절차,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)

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에

관한 적용례) 제1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6(벤처기업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이익 비과세 특례)</u> <u>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 원(이하 이 조에서 “벤처기업 임직원”이라 한다)이 「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 조의17제1항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기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성과조건부주식”이라 한다)을 교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(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 당시의 시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교부이익”이라 한다)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하는 교부이익의 벤 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연간 한도 및 벤처기업별 총 누적 한도는 제 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</u>

<신 설>

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
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합
산하여 적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
경우 비과세 특례의 신청절차
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
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7(벤처기업 성과조건부
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
납부특례) ① 벤처기업의 임원
또는 종업원(이하 이 조에서
“벤처기업 임직원”이라 한다)이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
법」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
해당 벤처기업과 체결한 성과
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20
3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기주
식(이하 이 조에서 “성과조건
부주식”이라 한다)을 교부받음
으로써 얻는 이익(성과조건부
주식의 교부 당시의 시가를 말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교부이
익”이라 한다) 중 제16조의6에
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
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
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

라 납부할 수 있다.

1. 제16조의6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127조,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.

2.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「소득세법」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제16조의6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부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부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

에서 “분할납부세액”이라 한다)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.

3. 제2호 후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「소득세법」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「소득세법」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계약 해지 또는 해제, 환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성과조건부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
소유권을 상실한 성과조건부주
식에 상당하는 분할납부세액
중 미납부액은 납부하지 아니
하고,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중
해당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이
익에 관련한 세액은 환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
용하는 경우 성과조건부주식의
시가 산정방법, 납부특례의 신
청절차, 환급세액의 계산방법
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
통령령으로 정한다.